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박봉수 / 세무회계사

가.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1)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산업, 광고업, 노인 복지시설운영사업,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text{감면세액} = \text{법인세 산출세액} \times 50\%$$

감면소득

-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1) 업종별로 최소고용 기준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50%~10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조업·광업은 10인, 기타업종은 5인이상
- * (과세연도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합계) ÷ (당해 과세연도 월수)

2) 감면을

- 기본감면율(50%) + 추가감면율(고용증가율 × 0.5)
- 소득발생 과세연도는 반드시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최소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 배제합니다.

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이월공제가간이 연장됩니다.

- 1) '04.7.1~ '06.12.31까지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게 해당됩니다.
- 2) 창업 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결손금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7년동안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라.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됩니다.

1)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마.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다음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 벤처기업에 출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하여 취득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창업 및 전환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및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한함)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 부품 · 소재전문 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주식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개인의 다음 투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5%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및 구조조정조합,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조합에 출자하여 투자하는 경우 포함)

바. 주요 세무일정

1) 4월 : 원천징수세액 납부(10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25일)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자 납부기한(25일)

2) 5월 : 원천징수세액 납부(10일)

종합소득세 (양도세 포함) 확정신고납부기한(31일)

참고문헌 <국세청 발간 “중소 · 창업기업이 알아야 할 세금”>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법인세 (소득세)감면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 |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 기본감면율(50%) + 추가감면율(고용증가율 × 0.5) |
|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연장 | - '04.7.1 ~ '06.12.31까지 창업한 고용창출형창업기업 - 창업 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7년동안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 |
| 등록세 면제 |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
| 취득세 면제 | -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
| 인지세 면제 | -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용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 재산세, 종합토지세 | -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 |
|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박봉수 세무회계사무소

주 소 광주 서구 차평동 1187케이원오피스타운 8층 802호

전 화 062) 383-3600 팩 스 062) 375-6600

H. P. 016-613-7511 이 메 일 Pbstax@hanmail.net